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06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4. '일회용품(화장지, 종이컵, 냅킨 등) 제조, 개발', '사무용품 제조, 개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6. 12. 19.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020. 7. 10.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2017. 6. 27.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27. ○○ ○○구 B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75%를 감면신청하고, 그 무렵 취득세 등 85,361,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조업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2020. 5. 26.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포함한 259,544,07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한 뒤 2020. 8. 27.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4. 피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업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고, 원고는 목적 사업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시와 피고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피고 관할로 이전하게 되었다. 원고는 레지던스 등 임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피고의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피고의 세무과와 상담할 당시 피고의 담당자가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이에 따르게 되었고, 피고는 서류 심사를 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안내를 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도시재생기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매수 행위에 나아가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를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50%의 감면 조항 적용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으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업종은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생산품은 '밀짚화장지, 대나무 화장지, 대나무 생리대'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8.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8.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고, 2층부터 7층까지 용도도 이와 같다.

4) 피고도 2020. 5. 27.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7층 부분을 제3자에게 주거용도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 제2항 등 규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를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업종에 해당하여야 취득세 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위생용 종이제품)은 그 업종에 해당되는 반면, 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창업(2016. 3. 24.) 당시 영위하던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인 2019. 6. 18.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임대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7층 부분을 '제조업'(위생용 종이제품)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서 7층 부분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령의 요건을 명확히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세무담당 부서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 제출하였다는 추가 서류의 내용이 임대업에 관련한 것인지, '위탁가공업체 제조업'에 관련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므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임대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피고의 지역경제과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도시재생기금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도시재생사업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원칙 내지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50%의 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각 호의 추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 뿐인 점,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감면 조항을 적용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시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근거한 경정청구를 하여 허부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비례원칙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6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